

● 국토교통부공고제2024-59호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·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(법률 제19847호, 2023.12.26. 공포, 2024.4.27. 시행)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의,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, 심의기구 및 지원조직, 특별정비구역 지정, 선도지구 지정기준, 사업시행자·총괄사업관리자, 지원 및 특례, 공공기여 방안, 이주대책 수립,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인 택지개발사업 등 대상사업, 조성시점, 면적기준 등을 규정함 (안 제2조).
- 나.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, 고시 기간, 내용을 정함 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.
- 다.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절차,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 사유, 내용을 정함 (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).
- 라.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, 회의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심의·의결 시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기피·회피 결정과 민간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함 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마. 도시정비기획단에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두고, 그 밖에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바. 실무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,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,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정함 (안 제13조 및 제14조).
- 사.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,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을 정하고,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정함 (안 제15조 및 제16조).
- 아.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에 자족기능 향상과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고,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함 (안 제17조).

- 자.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, 제안요건 등의 절차를 규정함 (안 제18조).
- 차. 특별정비계획 수립 내용과 그에 필요한 의견청취 방법과 수립 이후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사유를 정함 (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).
- 카. 특별정비구역의 분할, 통합 및 결합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, 사업시행자·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 등의 요건을 규정함 (안 제22조).
- 타.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대상과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,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(안 제23조).
- 파.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에게 공고해야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(안 제24조).
- 하. 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 후 고시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(안 제25조).
- 거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·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한 기관들의 범위와 지정에 필요한 서류, 지정제안의 절차 등을 구체화함 (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).
- 너. 국가의 보조 또는 용자가 필요한 비용의 대상을 정하고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(안 제29조).
- 더.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(안 제30조).
- 러.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타법 및 조례에서 정한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범위와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리모델링사업의 특례 부여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규정함 (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).
- 머.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여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(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).
- 버. 이주단지조성,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, 주거와 경제생활의 안정이 필요한 이주민의 요건을 구체화함 (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).
- 서.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,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활용 시 필요한 내용과 공급기준을 구체화함 (안 제40조).
- 어. 사업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과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’에 따른 기반시설로 규정 및 기반시설의 설치 순서, 비용 분담등을 구체화하고,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기간을 정함 (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).
- 저.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(안 제44조 및 제45조).가. 노후계획도시 요건인 택지개발사업의 근거법령, 조성시점, 면적기준 등을 규정함 (안 제2조).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5-3 6층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

- 전자우편 : tryjyk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910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(전화 (044) 201 - 4927, 팩스 044-201-59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